

제 64 회 경기도체육대회

참 가 요 강

NEXT>경기

2018

경기도체육회

목 차

■ 대회 개요(취지, 일반사항, 시상)	3
■ 참가요령	12
1. 경기방법	12
2. 심판 및 경기규칙	12
3. 채점방법	13
4. 순위결정방법	13
5. 직장운동경기부	14
6. 참가자격	16
7. 참가신청	18
8. 시·군 대표자 회의	19
9.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19
10. 기타사항	20
■ 참가요강 변경사항	21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27
1. 육 상	29
2. 수 영	32
3. 축 구	33
4. 테 니 스	34
5. 정 구	35
6. 배 구	36

7. 탁 구	37
8. 복싱	38
9. 역도	39
10. 씨름	40
11. 유도	41
12. 검도	42
13. 궁도	43
14. 배드민턴	44
15. 태권도	45
16. 볼링	46
17. 골프	47
18. 보디빌딩	48
19. 우슈	49
20. 사격	50
21. 당구	51
22. 농구	52
23. 레슬링	53
24. 바둑	54
■ 총포소지 허가 관련 규정	55

대 회 개 요

취 지

경기도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우의와 체위를 향상시켜 향토 체육의 발전과 경기인구의 저변확대로 신인 선수를 발굴하며,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도 체육진흥에 이바지한다.

일반사항

1. 대회기간 : 2018. 4. 26(목) ~ 4. 28(토) 3일간
2. 개최지 : 양평군
3. 주 최 : 경기도체육회
4. 주 관 : 양평군 / 양평군체육회
5. 후 원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 양평교육지원청
6. 경기종목 : 24개 종목(정식종목 21개, 시범종목 3개)
※ 시범종목 : 농구, 레슬링, 바둑

7. 경기종목 및 종별

[● 시범종목]

번호	구분 종목		일반부		고등부		비고
			남	여	남	여	
1	육상	상	○	○	○	○	
2	수영	영	○	○			
3	축구	구	○	○			
4	테니스	스	○	○			
5	정구	구	○	○			
6	배구	구	○	○			
7	탁구	구	○	○			
8	복싱	싱	○				
9	역도	도	○				
10	씨름	름	○				
11	유도	도	○				
12	검도	도	○	○			
13	궁도	도		○			
14	배드민턴	턴	○	○			
15	태권도	도	○	○			
16	볼링	링	○	○			
17	골프	프	○	●			
18	보디빌딩	딩	○				
19	우슈	슈	○				
20	사격(트랩)			○			
21	당구	구	○	○			
22	농구	구	●				
23	레슬링	링	●				
24	바둑	둑	●	●			

시 상

1. 종합시상

- 1부 대항 :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 2부 대항 :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2. 종목별 시상

- 종목별 1, 2, 3위에 우승배 및 상장수여.

3. 개인 및 단체 시상

- 개인 및 단체팀 1, 2, 3위에 상장 및 메달 수여.

4. 성취상 시상

- 전년도 종합성적 대비 현연도 종합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선수단 (1부·2부에 1, 2, 3위 성취상배 수여)

5. 모범선수단상

- 대회 및 경기장 질서에 가장 모범적인 선수단(1부, 2부)에 1, 2, 3위 모범상배 수여.

6. 입장상

- 개회식 입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시·군선수단(1부, 2부)에 1, 2, 3위 입장상배 수여.

7. 경기단체 질서상

- 경기장 질서 및 대회운영을 잘한 경기단체에 질서상배 수여.

8. 최우수선수상(MVP)

- 개인 및 단체팀 선수 중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정, 수여

9. 식전행사

《개 회 식》

가. 일 시 : 2018. 4. 26(목) 19:00 예정

나. 장 소 : 양평종합운동장

다.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분)		
19 : 00	19 : 01	1	• 개 식 통 고	사 회 자
19 : 01	20 : 03	62	• 시·군선수단 입장	시·군선수단
20 : 03	20 : 06	3	• 국 민 의 례	전 체
20 : 06	20 : 07	1	• 개 회 선 언	경기도체육회 임원
20 : 07	20 : 09	2	• 대회기 게양	(승리의 노래 합창)
20 : 09	20 : 12	3	• 환 영 사	양평군수
20 : 12	20 : 15	3	• 대 회 사	경기도지사
20 : 15	20 : 18	3	• 축 사	경기도의회 의장
20 : 18	20 : 21	3	• 축 사	경기도교육감
20 : 21	20 : 26	5	• 성 화 점 화	성화 최종주자
20 : 26	20 : 28	2	• 선수대표 선서	선수대표(남·여)
20 : 28	20 : 31	3	• 경기도의 노래	전 체
20 : 31	20 : 40	9	• 기수단 퇴장	시·군선수단

라. 시·군 선수단 입장순서

- 안산시 → ○ 군포시 → ○ 수원시 → ○ 하남시 →
- 고양시 → ○ 오산시 → ○ 용인시 → ○ 이천시 →
- 성남시 → ○ 양주시 → ○ 부천시 → ○ 구리시 →
- 화성시 → ○ 안성시 → ○ 남양주시 → ○ 의왕시 →
- 안양시 → ○ 포천시 → ○ 평택시 → ○ 여주시 →
- 의정부시 → ○ 동두천시 → ○ 파주시 → ○ 가평군 →
- 시흥시 → ○ 과천시 → ○ 김포시 → ○ 연천군 →
- 광주시 → ○ 광명시 → ○ 양평군 →

마. 입장 행진대형 편성요령

- 1) 입장대형 1개 제대로 편성
- 2) 인원 자율편성(50명 이내)
- 3) 기본모형(49명 편성기준)

- 임원단위대 17명(1+4열 × 4오)
- 여자단위대 16명(4열 × 4오)
- 남자단위대 16명(4열 × 4오)

4) 입장행렬 소품 제한

동력구동(차량 등), 대형구조물(2m×3m 이상), 대형풍선(지름 25cm 이상), 발사거리 30cm 이상의 폭죽, 소형 항공물류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류

※ 허용기준

밴드·고적대·풍물단중 택 1, 홍보현수막 및 기, 소형풍선(지름 25cm 이내), 인형(1인용), 색종이, 색테이프, 기타 2인 미만(1인)이 활용할 수 있는 용구

5) 입장식행사 시간 제한

본부석 앞 진행시 입장행렬 지·정체로 인해 입장식 행사일정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입장단위대 입장시간 : 각 시·군별 2분 이내

바. 개회식 입장요령

1) 경의 표시는 본부석 앞 제1표기선에서 부터 제2표기선까지로 한다.

(거리 20미터)

2) 단위대 지휘자는 제1표기선에서 제2표기선까지 자연스럽게 행진하면서 시·군별로 통일된 동작으로 경의를 표시하며 통과한다.

3) 태극기는 사열하지 않는다.

4) 체육회기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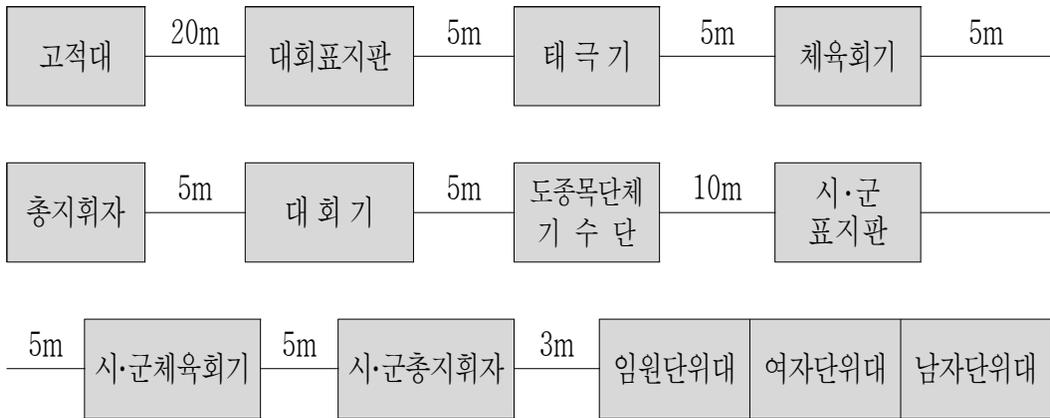
5) 대회기는 총지휘자가 제1표기선에서 경례를 하면 기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6) 시·군 선수단 기수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사. 시·군 선수단 복장

1) 시·군 선수단 복장은 시·군별로 통일한다.

아. 입장시 행진대행



자. 정열시 요령

- 1) 선수단 정열시 앞 사람과의 거리는 1미터를 유지하며 옆 사람과의 거리는 20센티미터를 유지한다.
- 2) 입장선수단의 거리는
 - (가) 표지판 수와 시·군 기수 → 5미터
 - (나) 시·군 기수와 총지휘자 → 5미터
 - (다) 총지휘자와 단위대 → 3미터
- 3) 도종목단체 기수단은 본부석을 통과하여 반대편 중앙선에서 4열이 2열로 변하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져 표시된 선에 정렬한다.
- 4) 시·군 선수단은 본부석을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진입할 때 표지판수와 선수는 입장하되 기수는 정하여진 위치에서 멈춘다.

- 5) 시·군 선수단은 단위대별로 입장이 완료되면 지휘자가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 6) 시·군 선수단 입장이 완료되면 태극기와 체육회기는 본부석 밑으로 퇴장한다.
- 7) 표지판수, 시·군 체육회기 기수, 도종목단체 기수는 기봉의 하단을 지면에 대고 “쉬어” 자세를 취한다.
- 8) 대회기 기수는 대회기 계양대 앞에서 기폭을 팽팽하게 잡고 부동자세를 취한다.

차. 국기에 대한 경례

- 1) 내빈과 관중은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일어나 국기를 향한다.
- 2) 선수단은 총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뒤로 돌아서서 전원 거수경례한다.
- 3) 기수는 국기를 향한 다음 기를 45°도 굽혀 경례한다.

카. 퇴장요령

- 1) 대회 표지판수는 정면으로 퇴장한다.
- 2) 시·군 선수단 및 기수단은 본부석 중앙선을 기점으로 좌측은 좌측문으로 우측은 우측문으로 퇴장한다.

타. 개회식 입장 단위대 집결요령 : 시·군 선수단은 개회식 당일 17:30(예정) 까지 양평종합경기장에 집결하여 입장요령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다.

《폐 회 식》

가. 일 시 : 2018. 4. 28(토) 17:00 예정

나. 장 소 : 물맑은 양평체육관

다.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분)		
17 : 00	17 : 01	1	개 식 통 고	사 회 자
17 : 01	17 : 05	4	성 적 발 표	임 원 장
17 : 05	17 : 25	20	시 상	대 회 장
17 : 25	17 : 29	4	폐 회 사	대 회 장
17 : 29	17 : 32	3	대회기 전달	양평군수 → 대회장 → 안 산 시 장
17 : 32	17 : 35	3	환 송 사	양 평 군 수
17 : 35	17 : 36	1	폐 회 선 언	부 대 회 장
17 : 36			시·군 선수단 퇴 장	이별의 노래 합창

참 가 요 령

1. 경기방법

- 가. 각 종목별 1부·2부, 시·군대항전으로 한다.
- 나. 경기진행은 종목별로 7개 시·군 이상이 참가 하여야 경기를 실시하며, 1부·2부 혼성경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 다.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단체경기 및 개인·단체경기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seed)는 개최지 시·군에만 배정한다.
- 라. 경기방법은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경기 종목의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 마. 1부·2부 구분기준 : 인구기준(2017년도 12월말 기준)
 - 1) 개최지가 속한 부 15개 시·군
 - 2)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 16개 시·군

2. 심판 및 경기규칙

- 가. 심판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 나. 각종목별로 위원장 및 심판부원의 ID카드를 착용케 하여 경기운영의 신뢰성을 확립 한다.
- 다. 종목별 경기운영은 해당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 라.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우천시를 대비하여 차선책등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채점방법

가. 채점은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중 채점내규에 의거 한다.

나. 기권·몰수·불출장한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경기 몰수는 당해 경기단체가 하되 채점 여부는 당해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frac{\text{1부·2부별 득점합계}}{\text{종별·체급별·세부종목별 득점합계}} \times \frac{\text{당해 1부·2부의}}{\text{종별·체급별}} \times 100 = \frac{\text{당해}}{\text{시·군의}} \text{종합득점}$$

획득점수

라. 종합채점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마.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하여 배점한다.

바. 본 대회에서 시범종별은 종합채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순위 결정방법

가. 1부·2부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나. 1부·2부별 종합득점이 동점인 경우

- 1)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2)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3)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4) 3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경기자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공사)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당해연도 2. 28.(제64회 2018. 2.28) 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 할 수 있다.

<추가>

① 신규선수 및 신규팀의 경우 당해연도도민체전 이전·후 최소 1회 종목별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

※미참가시 차기대회 해당 세부종목(종별) 참가 불가

②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자는 당해연도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 2) 단일소속(직장운동경기부)인원으로만 구성하여 참가신청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축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검도, 배드민턴, 볼링 등 9개 종목)

※골프는 직장팀 구성이 안됨

-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학업을 위하여 대학(주·야간)에 재학중일 경우 전국체전에 대학부 종별이 없는 종목에 한하여 직장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수영, 정구(여), 배구(여), 역도, 궁도, 보디빌딩, 우슈, 사격, 당구, 농구 등 10개 종목)

- 4) 전년도(전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직장팀 선수는 참가 할 수 없다.

나.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공사) 및 일반기업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 21개 정식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없음.

단)정식종목이라도 대회 미 개최 시 지도자·선수 전원 기본점수 부여

(나)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선수 가산점 배점

(※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2) 정식종목 이외 동·하계체전 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나)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선수 가산점 배점

(※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 가산점 적용의 경우 재직선수에 한함)

※ 육성점수 배점표

구 분		육성 점수 배점				비고
		기본 점수	가산점 배점			
			전국체전 (동·하계)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대비 %)				
개인	1위	120점	80점	240점(300%)	160점(200%)	
	2위		40점	80점(200%)	60점(150%)	
	3위		20점	20점(100%)	20점(100%)	
	4위이하		10점	-	-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	1위		120점	360점(300%)	240점(200%)	
	2위		60점	120점(200%)	90점(150%)	
	3위		40점	40점(100%)	40점(100%)	
	4위이하		10점	-	-	

단, 일반기업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점수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형태	육성점수 반영 비율
운영비/선수영입비/훈련비 지원	100%
그 외 지원(일회성/각종지역행사)	50%

3) 육성점수는 상한선인 5,00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5,000점을 초과 시 최고 시·군의 점수 비율로 육성점수를 배점하여 타 시·군에도 적용한다.

⇒ 육성점수 = 기본점수 + 가산점(전국체전 + 올림픽, 아시안게임)

예시) A시 육성점수가 6,000점일 경우

[6,000점 = 기본점수 + 가산점(전국체전 + 올림픽, 아시안게임)]

※ A 시는 육성점수가 상한선인 5,000점이 되며 아래의 비율계산법에 의해 타 시·군은 총 획득한 육성점수의 83.3%만 적용된다.

☆ 비율계산법 : 5,000점(상한선) ÷ 6,000점(A시 육성점수) × 100% = 83.3%

다. 구비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
- 2)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 3)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기존 육성팀만 제출) 1부
- 4) 일반기업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해당 팀만 제출)
- 5)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1부(대진추첨 전일 까지)
- 6) 타 시·도 영입선수는 전년도 전국체전 참가 증빙서류 1부
(전국 동·하계체전 홈페이지 출력본)
- 7) 증빙서류는 원본 1부만 각각 분리하여 제출
(21개 정식육성종목 1부, 21개 이외 육성종목 1부)
- 8)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참가확인서 복사본 1부(해당 팀만 제출,
대회 종료 후 당해연도내 추가 제출)
- 9) 이적동의서 1부(신규 영입 선수 및 신규 창단팀 소속 선수)

6.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서 아마투어 선수에 한 함.

나. 금번 대회에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18세 미만 기준 - 2000. 1. 1.(포함)이후 출생자)

다. 고등학교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1) 육상종목 고등부 선수는 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 2)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육상종목 선수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2-1) 경기체육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육상종목 선수는 출신 초등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 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일반부에 참가 할 수 없다.

라. 금번대회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등록기준지는 2015. 2. 28.(포함)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둔 곳으

로 참가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2015. 2. 28.(포함) 이후부터 2017. 2. 28.(포함) 사이에 경기도내에서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 2) 주소지는 2017.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등록이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별칙) 3호에 위배되지 않는 선수 참가

- 3) 군인(직업군인제외) 및 대학생(일반학과,체육과)선수와 중앙 회원 종목단체에 등록된 (2018년)엘리트 현역 선수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만, 중앙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엘리트 현역 선수 주소지참가 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을 경우에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1) 상무팀 소속 군인은 전년도(전회)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우 당해연도(금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3-2) 경기도내 K-3팀은 연고지로 등록된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거주와 상관없이 출전)

※단일팀 잔여선수는 주소지·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없다.

- 4) 전년도(전회)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실업(일반) 선수나, 타 시·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된 실업(일반) 선수는 당해연도(금회)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없다.

- 5)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일)

※ 육상 고등부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가능(재학증명서, 임시 학생증 불가)

- 6)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가 이중 신청되었을 경우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시·군으로 참가한다. 선수 1명의 출전동의서를 2개 시·군 이상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선수의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 7)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중인 선수는 참가 할 수 없고, 도종목단체 이상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간 중

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 할 수 없다.

8) 동일인이 1개 경기 이외에 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예) 유도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등 타 종목에 참가할 경우

7.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 2018. 3. 12.(월) 18:00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 체육지원과

다. 수정기간 : 2018. 3. 13.(화)~3.15.(목) 15:00

라. 신청요령

1)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2) 참가신청서 주소란에 등록기준지 또는 현주소를 기재할 것.

(비고란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인지를 명확히 기재할 것)

3) 개인경기종목의 참가신청서 작성 시 세부종목별 참가표시를 (“○”)

수정기간 종료 후에는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정확히 기재 요망.

※단, 변경사항 발생 시 도체육회에서 수정

※참가신청서는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필히 다운받아)하여 작성 제출

마. 방 법 : 시·군별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다.

바.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1) 참가신청서

(가) 원본 1부(총괄표, 참가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나) 사본 3부(총괄표 및 참가신청서만)

2) 구비서류

(가) 고등부(육상)에 참가하는 선수

- 학교장 발행의 재학증명서 1통(사진첨부)

- 경기체육고등학교 재학생 : 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 경기체육중 졸업후 경기체육고등학교 재학생 : 초등·중등 졸업증명서 각 1통
- (나) 군인, 일반대학생, 현역선수가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 등록기준지 참가자 : 기본증명서 1통
 - 주소지 참가자 : 주민등록초본 및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 K-3팀 : 2017년도 선수등록 현황 각 1부.
- (다)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 등록기준지 참가자 : 기본증명서 1통
 - 주소지 참가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자격종목 참가자 : 총포허가증 각 1통
- (라) 구비서류 보완은 필히 대진추첨 개시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8. 시·군 대표자회의

가. 일 시 : 2018. 4. 4(수) 14:00(예정)

나. 장 소 : 양평군(예정)

다. 토의안건

- 1)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경기장 질서 확립
- 2) 대진추첨 및 기타사항

9.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 3. 19(월) ~ 3. 29(목) / 11일간

나. 조 치 : 참가신청 마감 후 열람기간 동안 시·군 책임자는 타 시·군의 참가신청서를 사전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이를 조사 처리 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일체 처리하

지 않음.

단,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 될 경우(게임몰수)

다. 열람확약서 제출 : 2018. 3. 29(목) 15:00까지

10. 기타사항

가. 참가신청 선수의 군입대, 출산(임신), 부상시 대회 개막 7일전 (2018. 4. 19(목) 18:00)까지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및 진단서 (병무청,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를 첨부하여 제출

나. 참가신청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선수를 교체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대회개막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이 처리하되 그 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처리는 해당 시·군에서 조치한다.

스포츠 상해보험은 시·군 선수단별 가입하여야 함.

참가요강 변경사항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사항

○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구분	현행	개선사항	비고
공 통	<p>6. 참가자격_라_3) 군인(직업군인제외) 및 대학생(일반학과,체육과)선수와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2017년)현역 선수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을 경우에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p>	<p>6. 참가자격_라_3) 군인(직업군인제외) 및 대학생(일반학과,체육과)선수와 중앙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2018년)엘리트 현역 선수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만, 중앙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엘리트 현역 선수 주소지참가 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을 경우에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p>	
	<p>6. 참가자격_라_5)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도에 참가할 수 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일) ※ 육상 고등부의 경우 '학생증'만가능(재학증명서, 임시학생증 불가)</p>	<p>6. 참가자격_라_5)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도에 참가할 수 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일) ※ 육상 고등부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가능(재학증명서, 임시학생증 불가)</p>	
	<p>6. 참가자격_라_3-2) 경기도내 K-3팀은 연고지로 등록된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와 거주와 상관없이 출전)</p>	<p>6. 참가자격_라_3-2) 경기도내 K-3팀은 연고지로 등록된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와 거주와 상관없이 출전) ※단일팀 잔여선수는 주소지·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없다.</p>	
	<p>7. 참가신청_다_3) 참가신청 마감 후 수정 불가</p>	<p>7. 참가신청_다_3) 참가신청 마감 후 시군별 3일간 수정기간 적용 (단, 변경사항 발생 시 도체육회에서 수정) ※ 수정기간 종료 후 일체 변경 불가</p>	

○ 직장운동경기부 참가요령

구분	현행	개선사항	비고
참가자격	<p>5. 직장운동경기부_가_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2017. 2. 28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 할 수 있다.</p>	<p>5. 직장운동경기부_가_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당해연도 2 28(제64회 2018.2.28.)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 할 수 있다.</p> <p><추가> ①신규선수 및 신규팀의 경우 당해연도도민체전 이전·후 최소 1회 종목별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 ※미참가시 차기대회 해당 세부종목(종별) 참가 불가 ②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자는 당해연도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p>	
		<p><추가> ③중앙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자는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최소 만2년이 경과한 때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④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직장팀 선수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 ⑤선수계약시 최소계약기간 : 1년</p>	<p>2018년 유예 2019년 적용</p>
	<p>5. 직장운동경기부_가_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2017.2.28.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 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영입한 선수에 대해서도 참가자격이 허용되며, 도내 또는 타 시·도 구분 없이 기본점수(21개 정식 종목 이외 종목)와 전국체전 메달획득 점수가 부여됨.</p>	<p>5. 직장운동경기부_가_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2017.2.28.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 할 수 있다.</p> <p><이하 문구 삭제></p>	

구분	현행	개선사항	비고
참가자격	<p>5. 직장운동경기부_가_2) 단일소속(직장운동경기부)인원으로만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축구,테니스,정구,농구,배구,탁구,검도,배드민턴,볼링 등 9개 종목) ※ 골프는 직장팀 구성이 안됨</p>	<p>5. 직장운동경기부_가_2) 단일소속(직장운동경기부)인원으로만 구성하여 참가신청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축구,테니스,정구,농구,배구,탁구,검도,배드민턴,볼링 등 9개 종목) ※ 골프는 직장팀 구성이 안됨</p>	
	<p>5. 직장운동경기부_가_3) 직장운동경기부와 혼성(일반)인원으로 구성(팀)시 출전할 수 있다. (해당종목: 육상,수영,복싱,역도,씨름,유도,궁도,태권도,보디빌딩,우슈,사격,요트,당구,레슬링 등 14개종목)</p>	<p><삭제></p>	
	<p>5. 직장운동경기부_나_1) 21개 정식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없음 나)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선수 가산점 배점</p>	<p>5. 직장운동경기부_나_1) 좌동 좌동 신설> 단)정식종목이라도 대회 미 개최 시 지도자·선수 전원 기본점수 부여</p>	
	<p>5. 직장운동경기부_나_2) 21개 정식종목 이외 하계·동계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 1인 80점 나) 전국체전·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선수 가산점 배점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p>	<p>5. 직장운동경기부_나_2) 정식종목 이외 동·하계체전 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 1인 120점 나) 전국체전·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선수 가산점 배점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신설> 가산점 적용의 경우 재직 선수에 한함.</p>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구 분	현 행	개 선 사 항	비 고
농 구	2. 참가자격 가. 만18세 이상(고졸이상인자 나. 비등록 선수는 고졸이상인자 다. 중앙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중·고를 경기도 소재 학교 졸업자 한함.(중앙단 체 등록해지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라. 대학 및 프로선수 출신은 은퇴 후 만 3년 경과된 자	<삭제> 2. 참가자격_가,나,다,라 ※공통자격에 한함	
당 구	3. 참가종목_포켓볼종목 포켓8볼 포켓9볼	3. 참가종목_포켓볼종목 포켓9볼 포켓10볼	
역 도	체급별 경기진행 2일	체급별 경기진행 3일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육 상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트랙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100m	○	○	○	○
200m	○	○	○	○
400m	○	○	○	○
800m	×	×	○	○
1,500m	○	○	○	○
5,000m	○	○	○	○
400mR	○	○	○	○
1,600mR	○	○	○	○
계 : 8종목	7	7	8	8

나. 필드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높 이 뛰 기	○	○	○	○
멀 리 뛰 기	○	○	○	○
포 환 던 지 기	○	○	○	○
창 던 지 기	○	○	○	○
계 : 4종목	4	4	4	4

다. 마라톤 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10km(남·여)	×	×	○	○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각 시·군별 1인 2종목이내 1종목 2인 이내(단, 릴레이는 제외)

나. 10km마라톤은 시·군별 남·여 각 5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트랙, 필드의 경기진행은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나. 마라톤의 경기진행은 1부, 2부를 구분치 않고 진행한다.

(1부, 2부를 구분해서 채점)

다. 10km마라톤 출전선수 참가자격

(10km는 1963년 포함 이후의 출생자 참가 가능)

※ 예) 1963년생, 1964년생, 1965년생.....

라. 시·군 단체전경기로 제한 시간 내 완주한 선수의 순위로 결정

※ 마라톤경기 제한시간

남자(10Km) - 45분

여자(10Km) - 55분

5. 채점방법

가. 트랙, 필드, 마라톤을 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분리 채점한다.

나. 트랙, 필드는 세부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배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다. 마라톤의 채점은 제한 시간 내에 끝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 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제한 시간 내에 끝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채점대상은 되나 0점이되며, 최하위 시·군이 된다.

즉 0점의 시·군이 2개 시·군일 경우 최하위가 2개 시·군이므로 배점 3점부터 1점씩 가산배점 함.

6. 기타

가. 고등부 참가선수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을 지참한 자만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 재학증명서, 임시학생증 불가

2. 수 영

1. 종별 및 경기종목

종 목		일반부(대학생 포함)
		남·녀 공통
경 영	자 유 형	50m, 100m
	평 영	50m, 100m
	접 영	50m, 100m
	배 영	50m, 100m
	혼 계 영	200m
	계 영	200m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시·군별 1명 2종목 이내, 1종목 2명 이내

4. 경기방법 : 타임레이스로 실시한다.

5. 기 타 : 계영 및 혼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별도 표시 없이 참가하는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6. 채점방법 :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3. 축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8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경기

나. 1회전부터 준결승까지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한다.

다. 결승전 무승부 시 연장전 실시, 연장전도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한다.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4. 테 니 스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2명 이상 4명 이내

4.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단체전(2단식 1복식)

(단식, 단식, 복식 순서로 경기함)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5. 정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국제식 3복식 2단식 3선승제

- 복식 : 7회 게임

- 단식 : 5회 게임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6. 배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남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2명 이내

나. 여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2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남자, 여자 - 6인제

나. 토너먼트식 경기(3판 2승제)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7. 탁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극동식 5단 2복 - 11점 5세트, 3세트 선승제)

나. 경기진행 시간이 20:00시가 경과할 경우 잔여경기는 익일 시행

5. 기 타 :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니폼 뒷면 중앙에 각자 성명(한글)을

다음 규격으로 필히 부착할 것.(참고 :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을 금지하며, 동일색상 경기복 착용불가)

규격 :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색상 : 바탕 흰색, 글자 검정색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8. 복 싱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체 급

	체 급	중 량	비 고
1	라 이 트 플 라 이 급	49kg까지	
2	플 라 이 급	52kg까지	
3	밴 텀 급	56kg까지	
4	라 이 트 급	60kg까지	
5	라 이 트 웰 터 급	64kg까지	
6	웰 터 급	69kg까지	
7	미 들 급	75kg까지	
8	라 이 트 헤 비 급	81kg까지	
9	헤 비 급	91kg까지	
10	슈 퍼 헤 비 급	+91kg이상	

3.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연령제한 참가(기준 : 1978년 포함 이후 출생자 참가 제한)

다. 경기도복싱협회에 등록된 선수(선수증 소지자)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체급 1명

5. 경기방법 :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9. 역 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체	급	체	중	비	고
1	56 kg 급	56 kg	까지		
2	62 kg 급	62 kg	까지		
3	69 kg 급	69 kg	까지		
4	77 kg 급	77 kg	까지		
5	85 kg 급	85 kg	까지		
6	94 kg 급	94 kg	까지		
7	105 kg 급	105 kg	까지		
8	+ 105 kg 급	105 kg	초과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총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각 체급 2명까지 신청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 인상, 용상 및 합계(인상+용상) 종목별 경기로 하여 각각 시상 및 채점한다.
6. 채점방법 : 체급별 참가자 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는 8위까지 채점 하되, 9명이상 출전할 경우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다. 인상, 용상 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한다.
(단, 2명이 참가한 시·군은 인상, 용상, 합계에서 전원 채점한다.)
예) 8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합계배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인상, 용상배점	3 점	2 점	1 점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0. 씨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급 및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개인전은 각 체급별 정선수 1명, 단체전 3체급중 경·중량급은 정선수 2명, 후보 1명, 무제한급은 정선수 1명

체 급	개인전	단체전	비고
경 장 급	-75kg	경량급(-85kg이하) - 정선수 2명 - 후보 1명	
소 장 급	-80kg		
청 장 급	-85kg		
용 장 급	-90kg	중량급(-110kg이하) - 정선수 2명 - 후보 1명	
용 사 급	-95kg		
역 사 급	-110kg		
장 사 급	-160kg	무제한급 - 정선수 1명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및 3체급 단체전으로 한다.
단, 단체전은 개인전에 참가한 선수만 출전 하되, 5전 3선승제로 하고, 4강전까지는 단판제로 한다.(결승전은 3판 2선승제)
 - 나. 단체전 후보선수는 신청한 체급에 한하여 부상이 발생한 선수에 대해 교체 한다. 단, 경기장 파견 의무요원이나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교체가 가능 하다.
 - 다. 무승부일 경우 주의, 경고가 없을 시는 양 선수 중 체중이 가벼운 선수를 승자로 하며, 체중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기타사항
 - 가. 모든 선수는 자기 체급 이상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 체급 이하 체급에는 참가할 수 없다.
 - 나. 단체전 출전팀은 계체 후 출전 순위표를 작성하여 대회운영본부에 제출하되 미 제출 팀은 실격처리 된다.
 - 다. 단체전 3체급 5명 선수 계체 확인 후 부상선수가 발생 시 1명 결원으로 성립 될 수도 있다.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2명(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2 점	11 점	9.5 점	6.5 점	2.5 점
명(팀)수	1(팀)명	1(팀)명	2(팀)명	4(팀)명	4(팀)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1. 유 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체급별 정선수 1명
4. 체 급

체 급	체 중	인 원
엑스트라 라이트급	-60kg급	각 체급별 1명
하 프 라 이 트 급	-66kg급	
라 이 트 급	-73kg급	
하 프 미 들 급	-81kg급	
미 들 급	-90kg급	
하 프 헤 비 급	-100kg급	
헤 비 급	+100kg급	

5.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 나. 모든 선수는 자기 신청체급에 한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 다. 경기시간은 5분 단위로 한다.
- 라.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도복 앞면 왼쪽에는 소속을 뒷면 중앙에는 성명을 필히 부착할 것 (도복은 청색, 백색 두 가지를 준비하되 대한유도회가 공인하는 유도복을 착용하여야 함).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2. 검 도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남자일반부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7명 이상 9명 이내

나. 여자일반부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3명 이상 7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선수 순위는 매 경기마다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경기 개시 20분 전까지 팀 감독 및 코치가 작성하여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기시간 : 남자부(5분), 여자부(4분)

라. 무승부일 경우 대표전을 하되, 제한시간 없이 단판승부로 한다.

5. 채점방법 : 채점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1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3. 궁 도

1.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대한궁도협회에 당해 등록된 선수

다. 남·여 혼성 참가 가능

3. 참가인원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7명 이내

나. 각궁 및 개량궁 모두 참가 할 수 있다. 단, 각궁은 4명이상 이어야 하며, 개량궁은 3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경기방법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나. 단체경기로 하되 7명이 참가하여 상위 6명의 성적합계로 단체 전 순위를 정하되, 단체전 기록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개인 상위자 순으로 우선 한다.

다. 시·군별로 1명씩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되 1명이 5순(1순 5발)을 발사한다.

라.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에 참가한 전 선수의 기록에 따라 1, 2, 3위를 정한다.

마. 동점일 경우 1위~3위선까지는 선다득점 순으로 정하며, 이때도 동점일 경우 비교전을 실시하고 4위 부터는 동순으로 정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개인순위 3위 까지 배점한다.(1위 : 3점, 2위 : 2점, 3위 : 1점)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4. 배드민턴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이상 7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전종별 : 2단식, 2복식, 1단식 - 3선승제)

나. 모든 경기는 3게임 21점 랠리포인트제로 실시한다.

다. 경기진행 시간이 20:00시가 경과할 경우 잔여경기는 익일 시행

라. 유니폼 티셔츠 뒷면 상단에 소속 시·군명을 반드시 표기 해야 한다.

마. 복식 파트너와 같은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 하여야 한다.

바. 유니폼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또는 치마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 경기복장 위배시 경기를 할 수 없다.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5. 태 권 도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

2. 체 급

구분	남 자 부		여 자 부		비고
1	-54kg급	- 54kg까지	-46kg급	- 46kg까지	
2	-58kg급	54초과 58까지	-49kg급	46초과 49까지	
3	-63kg급	58초과 63까지	-53kg급	49초과 53까지	
4	-68kg급	63초과 68까지	-57kg급	53초과 57까지	
5	-74kg급	68초과 74까지	-62kg급	57초과 62까지	
6	-80kg급	74초과 80까지	-67kg급	62초과 67까지	
7	-87kg급	80초과 87까지	-73kg급	67초과 73까지	
8	+87kg급	87kg초과	+73kg급	73kg초과	

3. 참가자격

가. 협회에서 인정한 유단자

나.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4. 참가인원 : 각 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개인전

6. 경기시간 : 부별 경기는 2분 3회전(중간휴식 1분). 단, 동점으로 3회전 종료시 1분간 휴식 후, 씨든데스 오버타임 회전(2분 1회전의 제4회전)을 실시.

7.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6. 볼 링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단체전 5인조 4게임으로 실시한다.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경기를 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의 최하위 1부·2부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 한다.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채점 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7. 골 프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시범)

2. 참가자격

-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 나. 프로페셔널 참가자 제외(프로선수, 골프교습 등 대가 및 보수를 받고 있는 자)
※ 대한골프협회 아마츄어 자격규칙 제1조
- 다. 연령제한 참가(기준 : 1988년 포함 이전 출생자)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

4. 경기방법 : 1부·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 가. 1개팀 구성은 4명으로 하고, 3명의 최저 스코어를 합산한다.
- 나. 스트로크 플레이어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다.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 경기 선수 중 기록순위에 따라 1, 2, 3위를 결정한다.
- 라. 참가선수가 3명 미만일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마. 경기용 사용구는 영국 R&A와 미국 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국제 공인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5. 채점방법

-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8. 보 디 빌 딩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체 급	일 반 부	비 고
1	플 라 이 급	60kg까지	
2	밴 텀 급	65kg까지	
3	라 이 트 급	70kg까지	
4	웰 터 급	75kg까지	
5	라 이 트 미 들 급	80kg까지	
6	미 들 급	85kg까지	
7	라 이 트 헤 비 급	90kg까지	
8	헤 비 급	90kg이상	

4.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총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각 체급 3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 가. 경기는 세계보디빌딩연맹과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규칙에 의해 실시함.
 - 나. 월체는 한 체급만 인정(상체는 인정되나 하체는 불가)
 - 다. 자유포즈 음악은 공동 음악으로 한다.
 - 라. 계측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6. 채점방법
 -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 나.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19. 우 슈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종목
 - 가. 투로 :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 나. 산수 : 5체급(-56kg, -60kg, -65kg, -70kg, -75kg)
4. 참가인원
 - 가. 투로 :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 1) 감독, 주무, 코치의 시·군별 4명 이내
 - 2) 세부종목별 1명이 참가하며 한 세부종목에 한하여 2명이 참가할 수 있음.
 - 나. 산수 : 코치의 체급별 1명
5. 경기방법 : 대한우슈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 투로(장권전능, 태극권전능, 남권전능)와 산수경기에 배점된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 한다.
 - 가. 투로(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 나. 산수종목의 채점은 채점내규에 의해 배점한다.

예) 10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0. 사 격

1. 종 별 : 일 반 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하되,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마친자로서 개인 총포소지 허가자.

나. 남·녀 혼성도 참가 가능

3. 참가종목 : 트랩(개인·단체)

※ 개인전은 별도 실시하지 않음.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3명 이상 4명 이내

5. 경기방법 : 대한사격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가. 단체전 : 4명이 출전하여 상위기록 3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정함.

나. 개인전 : 별도의 경기를 갖지 않고, 단체전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기록에 따라 결선경기를 거쳐 개인 1,2,3위를 결정 함.

6.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7. 기타사항

가. 경기 개시전 경찰관 입회하에 개인 총포소지허가증 확인(총포소지 허가 진행중인 자는 접수증 대체)

나. 총기 양도양수 금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1. 당 구

1.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하되, 캐롬과 포켓볼은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3. 참가종목 및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종목별 코치 외 선수10명 이내

참가종목		출전선수	비고	
캐롬종목	1쿠션(개인전)	1명	혼성 참가가능 (단, 남녀간 핸디 없음) 3쿠션에 한해서 남녀 혼성 및 중복신청 가능 (단, 남녀간 핸디 없음)	
	3쿠션(개인전)	1명		
	3쿠션(단체전 4명)	4명		
포켓볼종목	남자	포켓9볼	1명	9볼, 10볼 중복신청 가능
		포켓10볼		
	여자	포켓9볼	1명	9볼, 10볼 중복신청 가능
		포켓10볼	1명	

4. 경기방법 : 토너먼트 개인전 및 단체전(2단식 1복식)
 - 가. 대한당구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 나. 캐롬종목 토너먼트 단체전은 매 경기 시작 20분전에 단식, 복식 선수 명단을 감독 및 코치가 작성하여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채점방법 : 채점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1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2. 농 구(시범종목)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외 선수 12명 이내
4. 경기방법
 - 가. 대한농구협회 경기 규칙에 따른다.
 - 나. 토너먼트 경기 방법
 - 다. 8분 4쿼터 경기로 한다.
 - 라. 연장전은 3분씩 승패가 가려질 때 까지 한다.
5. 기타 : 모든 참가선수는 유니폼 앞에 소속 시·군 밑에 작은 번호를 부착하며, 뒷편에 큰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예) 4번 ~ 15번, 20번 25번(10단위 이상 6~9번 부착 금지/16번~19번)
6. 채점방법 : 시범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23. 레슬링(시범종목)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종목(양형 출전가능)
 - 가. 그레꼬로만형 : 59, 66, 71, 75, 80, 85, 98, 130kg(8체급)
 - 나. 자유형 : 57, 61, 65, 70, 74, 86, 97, 125kg(8체급)
4.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외 각 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 국내경기 토너먼트 대진방식으로 3분 2회전 실시 그 외 대한레슬링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 시범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24. 바둑(시범종목)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
- 다. 혼성페어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한다.

3. 참가종목 및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종목별 코치 외 선수 8명 이내

참가종목		출전선수	비고
남자일반부	개인전	1명	
	단체전	3명	단체전은 후보선수 1명 포함(4명)
여자일반부	개인전	1명	
혼성페어전	남, 여 혼성	2명	

4. 경기방법 : 토너먼트 개인전 및 단체전

- 가. 대한바둑협회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 나. 모든 종목은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단체전은 매경기 시작 20분전에 선수명단을 감독 및 코치가 작성하여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매 경기당 30분 초읽기 30초 3회로 진행한다.

5. 채점방법 : 시범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총포허가 관련 규정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1. 소지자가 지켜야 할 법령

가. 소지허가의 갱신

1) 소지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년간이므로 만료일 15일전에 반드시 허가 관청에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법 제16조1,2항)

2) 만일 유효기간에 허가를 갱신치 않고 총기를 계속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소지허가는 당연 취소되며, 총기는 불법무기로 회수됨.

단, 경찰서에 임시 영치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영치해제시까지 갱신을 유보할 수 있음.

나.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남에게 빌려서도 안됨.(법 제21조제5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1조 제3호)

다. 총기는 허가 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운반·장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 제1,2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3조 제1호)

라.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체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2조 제3호)

마.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시는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 1항)

바. 총기를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 1항)

2. 허가의 반납

가. 허가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소지허가증과 총기를 관할경찰서에 반납하여야 함.

나. 총기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자가 소지허가를 득한 후 양도하여야 함.

3. 총기류 안전수칙

가. 총기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47조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74조제1항제6호)

나.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방아쇠를 당겨 격발), 총집(케이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74조제1항제2호)

경기용 총기 및 실탄의 사용 관리상의 준수사항

- ◎ 사격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총기와 실탄은 대회 또는 훈련에 사용될 경우에는 진정한 스포츠용품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인매매·양도·증여 또는 변조 개조되는 경우에는 사회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해물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입니다.
- ◎ 대회와 훈련에 사용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도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 제재가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 총기·실탄의 사용 관리에는 총포화약단속법령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법령상 준수사항
 - 실탄의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단, 국가 경찰관서의 허가시에는 가능함.(법 제21조1항)
 - 총기 및 실탄의 발견 또는 습득시에는 국가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
 - 총기 및 실탄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법35)
 - 실탄사용자는 사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한 화약류 사용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63)
 - 상기 사항을 불이행시에는 10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게 된다.(법70, 71, 72, 73)
- ◎ 기타
 - 사용 후 발생한 탄피는 최대한 회수하여 실탄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각 팀별 총기·실탄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총기·실탄 관리의 책임성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 ◎ 경기용 총기·실탄을 부적법하게 사용시 연맹의 징계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모든 체육인은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모범이 되고 밝고 바른 일의 역군이 된다.”는 체육인 현장을 실현하는데 사격인 모두가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